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미사용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권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화 등 〉

■ 이연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613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문위원 임 종 수

목 차

□ 이연회의원 대표발의(2205613)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권, 그 소멸시효 및 소멸시효 완성 시 국고 귀속 등(안 제32조의2 신설 및 제69조제4항)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5
1) 제안배경	5
2) 반환 주체에 대한 검토	8
3) 소멸시효 완성 전 사전 고지(안 제32조의2제2항)	9
4) 소멸시효 기간(5년)의 적정성(안 제32조의2제3항)	10
5) 소멸시효 완성 시 국고 귀속(안 제32조의2제3항)	14
6) 과태료 신설 (안 제69조제4항제3호)	15
다. 관계기관 의견	16
1) 국토교통부	16
2) 한국공항공사	17
3) 인천국제공항공사	18
4) 한국항공협회	19

□ 이연회의원 대표발의(22056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연회의원 등 20인
2. 제 안 일 : 2024. 11. 15.
3. 회 부 일 : 2024. 11.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여객공항사용료’ 등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여객공항사용료’의 경우 항공권 구매자가 구입하는 항공권에 포함되어 징수되고 있으나, 항공권 구입 후 항공권 취소 등의 사유로 공항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항공권 구매자는 자신이 지불한 ‘여객공항사용료’를 반환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사용료 반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항공권 구매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권 구매자가 공항시설이나 비행장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항운영자가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여객공항사용료’ 납부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항시설 이용객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및 제69조제4항제3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권, 그 소멸시효 및 소멸시효 완성 시 국고 귀속 등(안 제32조의2 신설 및 제69조제4항)

가. 개정안의 내용

안 제32조의2는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며, 소멸시효 완성 전에 반환청구권의 존재를 납부한 자에게 3회 이상 고지하도록 하고, 소멸시효 완성 시에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임.

또한, 안 제69조제4항제3호는 안 제32조의2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3회 이상의 사전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신설>	제32조의2(여객공항사용료의 반환 청구 등) ① 항공 여객이 공항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료(이하 “여객공항사용료”라고 한다)를 납부한 후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면 그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는 반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여

현행	개정안
제69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u><신설></u>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공항운영자는 제3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여객공항사용료 납부자에게 여객공항사용료를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3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공항시설의 이용이 예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여객공항사용료는 국고로 귀속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객공항사용료 청구 방법·절차 및 고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제69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여객공항사용료 납부자에게 여객공항사용료를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3회 이상 고지하지 아니한 자

현행	개정안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항시설을 예정대로 사용 또는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 고지에 관한 특례) 제3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1) 제안배경

현행법 제32조제1항¹⁾에 따르면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공항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그 사용료 중에는 여객들이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 지불하여야 하는 ‘여객공항사용료²⁾’가 포함되어 있음.

1) 「공항시설법」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 여객공항사용료 】

구분	국제선		국내선
	출발여객	환승여객	
인천	1.7만원/인	1만원/인	0.5만원/인
김포	1.7만원/인	1만원/인	0.4만원/인
기타	1.2만원/인	1만원/인	

자료 : 국토교통부

이러한 여객공항사용료의 징수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대행할 수 있고,³⁾ 「항공사업법 시행령」은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항공운임 등 총액에 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⁴⁾에 따라, 현재 항공운

제20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고, 같은 항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공항운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사용료의 종류

라. 여객공항사용료

3)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고, 같은 항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공항운영자에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항운영자는 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항공사업법」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⑤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여행업자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운임 및 요금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이하 “항공운임 등 총액”이라 한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항공운임 등 총액) ①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항공운임 등 총액(이하 “항공운임 등 총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송사업자 등이 항공권 가격에 여객공항사용료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음.

이에 따라 비행기를 놓치는 등 공항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여객공항사용료는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이나,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를 모르고 지나쳐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5년간 169억원 이상의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항공사별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2020~2024.8.) 】

(단위 : 백만원)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에어로케이	계
4,550 (추정치)	3,467 (추정치)	2,114	1,266	1,392	3,349	334	369	135	16,976

*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는 자료 미제출로 개략적으로 추정한 수치임.

자료 : 국토교통부

이에 지난 2023년 및 2024년 우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환불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개정안은 여객공항사용료와 관련하여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사전고지를 할 것을 규정하며, 사전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비행기를 탑승하지 않는 경우 환급가능한 요금은 여객공항사

용료 외에 출국납부금(7,000원)⁵⁾이 존재하며, 개정안은 출국납부금, 여객공항사용료 등 미환급금 중 여객공항사용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출국납부금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범부처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여 제도상·행정상 개선책을 준비 중이라는 설명임⁶⁾.

2) 반환 주체에 대한 검토

안 제32조의2제1항은 항공여객이 여객공항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하면 공항운영자⁷⁾로 하여금 이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권 가격에 여객공항사용료를 포함하여

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②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7천원으로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

6) 참고로 지난 2024년 9월 정부는 동 개정안과 유사하게 항공기 미탑승 승객의 여객공항사용료 및 출국납부금의 환급청구권을 명시하고, 소멸시효를 규정하며, 소멸시효 완성 전 환급청구권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고, 소멸시효 완성 시 국고(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 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귀속시키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음. 한편, 지난 2024년 7월 정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하여 2024년 12월 본회의 가결되었음.

7)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공항운영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 17.>

34. “공항운영자”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이전 받은 자를 말한다.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용료 징수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항운영자를 반환 주체로 하는 경우 그 반환을 위해서는 승객 정보 등에 대한 자료를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받고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이 과정에서 승객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문제 등 국내·외 항공사와 공항운영자 간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적인 검토와 협조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지난 2024년 8월 발의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744호,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은 사용료 징수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반환 주체를 ‘항공권판매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두 개정안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의무부담 주체에 관하여 소비자 보호, 규제의 실효성 및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병행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3) 소멸시효 완성 전 사전 고지(안 제32조의2제2항)

안 제32조의2제2항에서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소멸시효 완성 전에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권이 있음을 미리 3회 이상 고지하여야 하도록 하고, 안 제69조제4항제3호에서 3회 이상 미고지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정보 부족으로 인해 사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사한 취지에서 발의된 공항시설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744호,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 소멸시효 완성 전 사용자에게 공항사용료의 반환청구권이 있음을 통지해야 하는 최소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 통지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소멸시효 기간(5년)의 적정성(안 제32조의2제3항)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⁸⁾에서 마련한 규정에서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항공운송사업자들은 약관상 항공권의 환불가능 기한을 1년으로 하거나 항공운송사업자별로 2~3개월 추가 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여객공항사용료의 환불가능 기한도 약 1년인 상황인 것으로 설명함.

8)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가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외에 각국 항공기업의 대표자들이 국제항공의 단체를 조직하여 상업항공의 권익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1945년 4월 쿠바 하바나(Havana)에서 세계 32개국의 61개 항공사가 세계항공사회의를 개최하여 제2차 대전 후의 항공수송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예상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처하고 국제항공수송사업에 종사하는 항공회사간의 협조강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순수한 민간의 국제협력단체로써 항공운임의 결정, 운송규칙의 제정 등이 주된 임무이며 준공공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출처 : 항공정보포털시스템

<https://www.airportal.go.kr/knowledge/network/LdAirportalDetail.jsp?ID=404>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약관 중 항공권의 유효기간 】

RESOLUTION 735	
PERIOD OF VALIDITY	
PSC(42)735	Expiry: Indefinite Type: B
RESOLVED that,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provided in the applicable fare rules:	
1. The period of validity for tickets issued at one way, round or circle trip fares shall be one year from the date of commencement of travel, or, if the first flight coupon is open-dated, and/or unused from the date of issue thereof.	
○ 항공권 유효기간 관련 : Resolution 735 (Period of Validity)	
1.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운송 개시일로부터 1년	

자료 : 국토교통부

【 국적항공사 항공권 유효기간 】

구분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 항공
국제여객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자료 : 항공협회

안 제32조의2제3항은 이러한 환불기한이 지나치게 짧다는 관점에서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 「민법」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하면서, 단기소멸시효(1년·3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상법」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은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소멸시효 】

채권의 종류 (근거규정)	소멸시효 기간
①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채당금 채권 ②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 ③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일당제, 기타 임시직 노무)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④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이하 민법 제164조) ⑤ 보험료의 청구권 (상법 제662조)	1년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상법 제662조)	3년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예, 리스계약 사용료) 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 채권 및 직무에 관한 채권 ⑤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⑥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퇴직금채권, 공증한 어음 채권, 상속회복청구권 (10년 규정별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10년 규정별도)	3년
상사채권(상법 제64조), 국민연금 급여청구권, 세금 등 과오납금반환청구권	5년
① 보통채권(민법 제162조 제1항) ② 판결/화해조서/조정조서/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 등으로 확정된 권리(민법 제165조 제1,2,3항) ③ 등기청구권(단, 점유하는 경우 시효없음) ④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0년
기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용익물권, 지적재산권, 채권적 성질의 가족법상 재산권 등)	20년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항변권,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등	본래의 채권시효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contentsView.do?dirId=07&contentId=030>)

각 개별 법률에서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할 때에는 「민법」, 「상법」,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의 소멸시효 기간 규정을 참고하되, 진정

한 권리관계의 회복 필요성과 권리관계의 신속한 확정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정하고 있음⁹⁾.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권의 경우 그 성격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전을 납부하였다는 점에서는 과오납금반환청구권¹⁰⁾ 또는, ‘공항 사용’이라는 서비스의 대가를 위하여 납부하였으나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한 반환청구권이라는 점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국세기본법」 또는 「상법」에서 양자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¹¹⁾하고 있는 점과 현재와 같이 관행에 따라 사실상 소멸시효로 기능하고 있는 1년의 환불가능 기한은 항공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것으로 보임.

9) 「법제이론과 실제」(2019), 국회 법제실, p.589

10)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법」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항공 소비자의 보호라는 측면과 함께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미반환 여객공항사용료를 관리하여야 하는 행정적 부담, 국제적으로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두고 있는 점,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²⁾

5) 소멸시효 완성 시 국고 귀속(안 제32조의2제3항)

안 제32조의2제2항은 공항 등을 이용하지 않았으나 5년의 소멸시효 완성 시까지 반환되지 않은 사용료를 국고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소비자가 공항을 실제로 이용했다면 여객공항사용료는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즉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귀속되었을 것이고, 특히 국내여객 공항이용료의 경우 「한국공항공사법」¹³⁾에 한국공항공사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744호, 강대식

12) 관련하여 지난 2024년 8월 발의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744호,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여 승객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전 세계 항공사와 정부는 다양한 이유로 통상 1년 이내에 환불을 허용하고 있는바, 여객공항사용료 환불에 대하여 5년이라는 긴 유효기간은 비현실적이고, 업계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유효기간이 길어지면 항공사에 과도한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간에 걸쳐 회계처리함에 있어 추가 비용 등을 유발하며, 구매일과 환불요청일 간 간격이 길어 환불해야 하는 결제수단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3) 「한국공항공사법」

제15조(국내여객 공항이용료의 귀속)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중 국내여객 공항이용료를 공사의 수입으로 한다.

의원 대표발의)은 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745호,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 의결을 전제로 소멸시효 완성 시 해당 여객공항사용료를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으로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음.

6) 과태료 신설 (안 제69조제4항제3호)

안 제69조제4항제3호는 미사용 여객공항사용료의 반환청구권에 관한 3회 이상의 사전고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항운영자에 대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임.

다만, 과태료 수준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744호,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은 반환청구권에 대한 사전통지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항공사법법」 제61조제10항¹⁴⁾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¹⁵⁾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취소·환불 관련 거래조건을 유효기간 도래 전에 최소 1회 이상

14) 「항공사업법」

제6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⑩ 항공교통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제8항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시행 2024. 9. 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19호, 2024. 9. 27, 일부개정] 제6조(항공권 취소·환불 또는 변경 안내) ③ 항공운송사업자등은 항공교통이용자가 구매한 항공권의 탑승일이 경과했으나 항공권을 사용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양식을 참고하여 항공권의 변경·환불 가능 여부 등을 알 수 있도록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취소·환불 관련 거래조건을 유효기간 도래 전에 최소 1회 이상 안내(항공교통이용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해야 한다.

안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¹⁶⁾.

다. 관계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항공권 미사용 시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권(소멸시효 5년) 부여, 소멸시효 경과 시 국고 귀속 등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함. 다만, 공항운영자가 반환청구권자에게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사전 고지하는 세부적인 방식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음. 현재 기 발의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4.8)도 사전 고지의 세부 방식을 하위법령(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개정안 제32조의2제2항의 사전 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과 관련하여 신고 또는 승인받은 사용료와 다르게 사용료를 받은 자에 대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등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 중 유사 수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16) 「항공사업법」

제8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제61조제10항(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또한, 항공기 미탑승 승객의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권은 이 법 시행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의 내용과 부칙 제3조 내용이 반환청구권 소급 적용과 관련하여 상호 상충됨에 따라 부칙 제3조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한국공항공사

공항공사는 항공권 발급과정에 관여하거나 승객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급 및 통지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항공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밖에 없는데, 특히 외항사의 경우 자국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이유로 승객정보를 공항공사에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환급 및 통지업무를 위해 항공사에게 개인정보를 받는 경우, 공사는 이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해야 하나, 공사는 승객정보의 적시성 및 정확성을 검증·확인할 권한이 부족하며, 이를 항공사에게 의존할 경우 공사 의무이행에 신뢰성이 하락됨. 특히, 외항사의 경우 정보의 불완전성 또는 정보 미제공으로 인하여 환급 및 통지업무에 있어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

아울러, 공사에서 환급절차 및 반환청구권 통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승객정보를 항공사와 협조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협조 또는

법적 제약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의 실효성이 감소될 것이며, 대부분의 승객이 항공권을 발권한 항공사로 가장 먼저 환급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사의 환급업무 수행은 국민편의성을 저해하는 방안으로 보임.

따라서 현재 공항이용료의 징수대행 체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외항사 승객정보 등 법적 이슈와 개인정보 보유 주체를 고려하였을 때, 개정되는 공항시설법 상 항공사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국민에게 미환급금의 환급을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편의를 가져다주는 방법임.

또한, 개정안에서는 시행일에 6개월을 부여하고 있으나, 항공사와 공항공사 모두 새로운 시스템과 절차를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3)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객공항이용료의 징수(항공사)와 환불(공항운영자)의 이원화는 여객 입장에서 환불청구 대한 혼란을 초래함.

또한, 공항운영자가 여객공항이용료를 환불 및 그 사전고지를 하기 위해 개인정보(발권정보, 탑승정보 등)가 필요한데 외항사의 경우 국내법에 따라 공항운영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

므로, 외항사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공항운영자는 개인정보 미보유로 여객공항이용료를 환불하거나 환불권을 통지할 수 없음.

4) 한국항공협회

세계 각국에서 공항별 여러 사용료 등을 항공권 구매 시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특정 사용료의 환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법률상 제약을 두고 있지 않음. 특히, 한국 출발 ‘여객공항사용료’에 대해 규제 시 다른 국가의 사용료와의 환급 차이 등으로 승객과 업계에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또한, 국적사는 운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 고객 동의하에 수집 중이며, 동 개정안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충족 여부 등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아울러, 국적사는 현재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항공권 유효기간·환불 청구 등 관련 안내를 시행·강화 중이며, 승객의 환불 요청이 있을 시 여객공항사용료 전액을 환불하고 있음. 특히, 국토부 고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가 개정(‘24.9.27)되는 등 이미 여러 과정에 걸쳐 항공권 유효기간·환불 등을 고지·안내 중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의 추가 규제에 따른 업계 부담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행과정 방안 등을 상세히 협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80